

청탁금지법 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한 임직원 상담사례

□ 상담사례 1 - 설날·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

- 상담일자: 2022년 1월 8일 / 8월 17일
- 상담내용

Q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, 설날·추석의 경우 농수산물·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된다고 하는데 얼마로 상향될까요?

- A) ○ 「청탁금지법」 개정(2021.12.16. 공포·시행)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‘농수산물·가공품’ 가액 범위는 설날·추석기간에 한해 두 배(10만원→20만원)로 상향됨.
-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(2022.1.5. 공포·시행)에 따라 농수산물·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은 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 (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)로 정해짐.

□ 상담사례 2 - 외부강의·회의 등 일괄신고 하는 방법

- 상담일자: 2022년 3월 2일
- 상담내용

Q) 매학기 3~4명의 직원이 각 3시간, 각 1~2회 사립대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, 매번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나요? 아니면 학기별로 일괄 신고해도 될까요?

- A) ○ 외부강의 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가 가능함. 신고서의 일괄 신고란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.
- 다만, 신고일 기준은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이므로 최초 출강 시, 신고기일에 맞게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함. 만일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한 후, 일괄신고 건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건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하면됨.

□ 상담사례 3 - 외부강의 등 요청, 월 3회를 초과할 경우

○ 상담일자: 2022년 9월 16일

○ 상담내용

Q) 외부강의 등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 이미 3번의 외부강의를 다녀왔습니다. 월 3회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A) ○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함. 다만,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이 제한될 수 있음.

○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.